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259

발의연월일: 2022. 1. 3.

발 의 자:박 정·이병훈·소병훈

오영환 · 이상헌 · 허 영

신영대 • 도종환 • 박성준

유정주 • 어기구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국제회의에 대한 정의는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의 국제회의산업은 MICE산업으로 개념이 확대되어 기업회의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국제회의 종류의 확대가 필요함. 또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통계 수집에 있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기관 및 기업의 협조가 부족하여 이를 제도화하여 통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현행법의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시설의 정의와 국제회의산업육 성기본계획 수립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6조, 제8조 및 제13조).

법률 제 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시회"를 "전시회·기업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대시설"을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 제13조제3항 중 "기관·단체에"를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	1
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	
토론회 · <u>전시회</u> 등을 포함한	<u>전시회·기업회의</u>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	3
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	
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u></u> -
<u>부대시설</u> 등으로서 대통령령	대시설 및 지원시설
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u>.</u>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	의 수립 등) ①
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6. (생략)

② ~ ⑤ (생 략)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 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략)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 진) ①·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 회의 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 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u>기관·단체에</u> 대하여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

·
1. ~ 5. (현행과 같음)
6.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
<u>항</u>
<u>7</u> .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①
1. ~ 5. (현행과 같음)
6. 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
스 연구개발
<u>7</u> .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
진) ①·② (현행과 같음)
3
기관·단체 또는
<u>기업에</u>

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